

= 연합푸드뱅크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의 명칭은 연합푸드뱅크라 한다. 필요 시 대외 명칭으로 경인 연합푸드뱅크 또는 연합푸드뱅크 전국나눔협력센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조 (소재지)

본 단체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213호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단체는 국내외에서 식품, 생활용품, 교육, 복지, 디지털 지원 자원의 나눔을 통하여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 위기가정, 디지털 소외계층, 재난·재해 피해자, 이주민, 해외 취약계층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내 개척교회, 지역교회, 복지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단체, 공공기관, 기업, 교육기관 및 해외 협력기관과 연대하여 국내 지역지부와 해외 협력거점을 구축하고, 공익적 나눔·복지·교육·구호·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 (성격)

① 본 단체는 비영리·공익 목적의 임의단체로 운영한다.

② 본 단체는 사적 이익이나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본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특정 정당, 정치인, 후보자, 선거운동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운영하지 아니한다.

④ 본 단체는 종교, 성별, 장애, 연령, 지역, 국적,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사업구역)

① 본 단체의 사업구역은 대한민국 전국으로 한다.

② 본 단체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 지역에서도 교육지원, 물품나눔, 긴급구호, 국제협력, 디지털 교육, 재능기부 및 복지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③ 해외사업은 해당 국가의 법령, 문화, 관습 및 협력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제6조 (기본원칙)

본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무상나눔 원칙

비영리·공익 목적 운영 원칙

정치적 중립 원칙

기부물품 및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 원칙

수혜자 존엄성 보호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

관계 법령 및 관할기관 지침 준수 원칙

국내외 협력기관의 독립성과 현지 법령 존중 원칙

제2장 사업

제7조 (사업의 종류)

본 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기부식품, 생활용품, 생필품, 위생용품, 교육용품 등의 모집·접수·보관·배분 사업

장애인, 어르신, 저소득층, 위기가정, 복지사각지대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

반찬나눔, 급식지원, 긴급생활지원,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

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한 무상교육, AI 교육, 챗봇교육, 스마트폰교육, 키오스크교육, 컴퓨터 기초교육 및 정보화 지원 사업

재난·재해, 긴급구호, 해외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 구호사업

국내 개척교회, 지역교회, 복지단체, 장애인단체, 사회복지기관, 교육기관,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사업

국내외 비영리단체, 국제구호단체, 교육기관, 복지기관, 종교기관, 기업, 개인 후원자 등과의 협력사업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등과의 공익 협력사업

해외 단체, 해외 교회, 해외 복지기관, 해외 교육기관 등과의 업무협약 및 국제협력 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등록, 배치, 활동관리 및 봉사확인 사업

물류, 운전, 행정, 상담, 교육, 홍보, 촬영, 디자인, 법률, 세무, 회계, 전산, AI 디지털 교육 등 각 분야 재능기부자와 기능기부자의 협력사업

자원봉사센터,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교회, 학교, 기업 등과 연계한 자원봉사 협력사업

국내외 강사, 전문가,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의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지원, 온라인교육, 현장 교육,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업

해외 단체, 해외 교육기관, 해외 복지기관, 해외 교회 및 개인 협력자와 연계한 교육봉사, 재능나눔, 강사파견, 원격교육, 교육자료 지원 사업

후원금 및 기부물품의 투명한 관리와 배분 사업

공익 목적의 교육, 상담, 홍보, 캠페인 사업

구글 비영리 지원사업,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 지원사업 등 승인받은 비영리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외 나눔·교육·복지·물류·행정지원 사업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조 (무상나눔 원칙)

① 본 단체가 제공하는 기부식품, 생활용품, 교육 및 복지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수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본 단체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수혜자에게 강제적인 금전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③ 사업 운영상 부득이하게 배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 실비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고,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영리행위 금지)

① 본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본 단체의 수입과 재산은 구성원 개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③ 기부물품, 후원물품, 지원물품은 판매, 교환, 사적 사용, 임의처분 또는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 (디지털 비영리 지원사업 활용)

① 본 단체는 구글 비영리 지원사업, 마이크로소프트 비영리 지원사업, 기타 국내외 비영리 디지털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푸드뱅크 운영, 기부물품 관리, 자원봉사자 관리, 교육자료 제작, 홈페이지 운영, 온라인 협업, 국제협력 및 디지털 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디지털 인프라는 본 단체의 비영리·공익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 영리사업, 정치적 목적 또는 부당한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디지털 인프라 사용에 따른 계정, 자료, 개인정보, 기부자 정보, 수혜자 정보는 관련 법령

과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회원 및 참여기관

제11조 (회원 및 참여기관)

본 단체의 회원 또는 참여기관은 본 정관의 목적과 무상나눔 원칙에 동의하는 개인, 단체, 기관으로 한다.

제12조 (회원의 구분)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일반회원: 본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사람

후원회원: 후원금, 기부금, 물품 또는 장소 등을 후원하는 사람 또는 단체

자원봉사회원: 본 단체의 사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사람

협력회원: 본 단체의 목적사업에 협력하는 기관, 단체 또는 전문가

지부회원: 국내외 지부 또는 지역협력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

특별회원: 운영위원회가 본 단체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또는 단체

제13조 (가입)

회원 또는 참여기관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단순 자원봉사, 일회성 후원, 물품기부 등은 별도 절차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 (권리와 의무)

회원 및 참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본 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회의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수할 의무

기부물품과 후원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의무

정치적 중립과 무상나눔 원칙을 지킬 의무

수혜자, 후원자,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

본 단체의 명칭과 로고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의무

제15조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 또는 참여기관은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격을 제한하거나 상실시킬 수 있다.

기부물품 또는 후원금을 부정 사용한 경우

수혜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요구한 경우

본 단체의 명칭을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본 단체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정관 또는 운영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하거나 유출한 경우

③ 자격 제한 또는 상실 결정 전에는 해당 회원 또는 기관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수혜자 보호, 물품 보호, 증거 보전이 필요한 긴급한 경우에는 선조치 후 소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6조 (총회)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회원 또는 참여기관 대표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제정 및 변경
- 임원의 선출 및 해임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
- 단체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
-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 (총회의 소집)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총회 소집은 회의일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 문자, 전자우편, 모바일 메신저 등 가능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관 변경 및 해산은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 (회의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기록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5장 임원 및 운영위원회

제21조 (임원)

본 단체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대표 1인
- 부대표 약간 명
- 운영위원 약간 명
- 감사 1인 이상
- 사무국장 1인
- 자문위원 약간 명

제22조 (임원의 선출)

-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단체 설립 초기 임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③ 초대 대표는 김재완으로 한다.

제23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24조 (대표의 직무)

대표는 본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5조 (운영위원회)

- ① 본 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 부대표, 운영위원, 사무국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③ 감사와 자문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회원 및 참여기관의 가입 승인

지부 및 협력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후원금 및 기부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자 모집, 교육, 배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재능기부자 및 기능기부자 협력에 관한 사항

실비, 활동비, 인건비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긴급조치 및 위반사항 처리

국내외 협력사업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

제27조 (감사)

감사는 본 단체의 회계와 업무 집행을 감사하며,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 (자문위원)

본 단체는 푸드뱅크,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회계, 세무, 법률, 행정, 물류, 국제협력, 교육, AI 디지털 분야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산)

본 단체의 재산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후원금

기부금품

보조금 및 공모사업비

물품후원

재능기부 및 장소후원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적합한 수입

제30조 (회계 관리)

본 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 (기부물품 관리)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은 접수, 보관, 배분, 폐기 과정을 장부에 기록하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회계연도)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 (예산 및 결산)

대표는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수익금 배분 금지)

본 단체의 수입과 재산은 단체 목적사업에만 사용하며, 회원 또는 임원 개인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35조 (실비 및 인건비)

- ① 본 단체는 자원봉사를 기본정신으로 한다.
- ② 자원봉사자, 재능기부자, 기능기부자 및 실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비, 재료비,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③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재단 등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활동비, 사업비, 공모사업비, 일자리사업비 등은 해당 지원 목적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할 수 있다.
- ④ 실비, 활동비 또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금액, 지급사유, 지급일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장 지부 및 협력기관

제36조 (지부 및 국내외 협력거점 설치)

- ① 본 단체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내 각 지역 및 해외 지역에 지부, 지역협력기관, 해외협력기관, 연락사무소 또는 협력거점을 둘 수 있다.
- ② 국내 지부는 개척교회, 지역교회, 복지단체, 장애인단체, 지역 봉사단체, 사회복지 관련자, 교육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해외 지부 또는 해외협력기관의 설치·협력은 해당 국가의 법령과 현지 사정을 존중하여 추진한다.

제37조 (지부 및 협력기관의 의무)

국내외 지부, 지역협력기관, 해외협력기관 및 협력거점은 본 정관과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상나눔 원칙, 회계 투명성, 정치적 중립, 개인정보 보호 및 현지 법령 준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제38조 (지부 및 협력기관 승인 취소)

국내외 지부, 지역협력기관, 해외협력기관 또는 협력거점이 기부물품 부정 사용, 금전 요구, 정치적 이용, 회계 불투명, 개인정보 침해, 현지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거나 협력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8장 자원봉사 및 재능기부

제39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① 본 단체는 자원봉사센터,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 교회, 학교, 기업,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등록·교육·배치·관리할 수 있다.
- ② 자원봉사자는 물품 접수, 분류, 포장, 배송, 배분, 행정, 홍보, 행사 지원, 교육지원, 상담, 전산 입력 등 본 단체의 목적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③ 필요한 경우 봉사활동 내역을 기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0조 (재능기부 및 기능기부)

- ① 본 단체는 물류, 운전, 행정, 상담, 교육, 홍보, 촬영, 디자인, 법률, 세무, 회계, 전산, AI 디지털 교육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협력하여 재능기부 또는 기능기부를 받을 수 있다.
- ② 재능기부자와 기능기부자는 본 단체의 무상나눔 원칙,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치적 중립 원칙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재능기부 및 기능기부의 세부 운영은 별도 운영규정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제9장 개인정보 및 수혜자 보호

제41조 (개인정보 보호)

본 단체는 수혜자, 후원자, 자원봉사자, 회원 및 협력기관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수혜자 존중)

수혜자에게 모욕감, 수치심, 종교적·정치적 강요 또는 부당한 부담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제43조 (사진 및 홍보물 사용)

수혜자의 사진, 영상, 사례를 홍보에 사용할 경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장 대외협력 및 국제협력

제44조 (대외협력 및 업무협약)

본 단체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단체, 비영리기관, 종교기관, 교육기관, 복지기관, 언론기관, 기업, 공공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산하기관, 출연기관, 위탁기관, 국제기구 및 해외 단체와 업무협약, 양해각서, 공동사업 협약, 후원협약, 위탁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45조 (국제협력 및 해외 교육지원)

- ① 본 단체는 해외 취약계층 지원, 국제구호, 교육지원, 디지털 교육, AI교육, 챗봇 활용교육, 평생교육, 복지협력, 물품나눔, 인도적 지원 등 공익 목적의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본 단체는 국내외 강사, 전문가, 자원봉사자, 후원자, 교육기관, 복지기관, 종교기관, 공공기관, 해외 단체 및 개인 협력자와 협력하여 재능기부 방식의 교육지원, 강사파견, 원격교육, 교육콘텐츠 제공, 교육자료 번역·보급, 온라인 상담 및 교육 멘토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국제협력 및 해외 교육지원 사업은 해당 국가의 법령, 문화, 관습 및 협력기관의 독립성을 존중하여 추진하며, 본 단체의 비영리 목적, 무상나눔 원칙, 정치적 중립, 회계 투명성 및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장 정관 변경 및 해산

제46조 (정관 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7조 (해산)

본 단체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8조 (잔여재산 처리)

본 단체가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공익단체, 장애인·복지·나눔 단체에 귀속한다. 잔여재산은 임원 또는 회원 개인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12장 보칙

제49조 (운영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0조 (준용규정)

본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비영리단체 운영 원칙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시 임원)

본 단체의 설립 당시 임원은 창립총회 회의록에 기재된 자로 한다.

제3조 (설립 당시 사무소)

본 단체의 설립 당시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특례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341, 213호에 둔다.